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의정부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9.20.(금)	2024.09.30.(월)	2024.10.02.(수)	2024.10.04.(금)	2024.10.11.(금)	2024.10.14.(월) ~ 2024.10.19.(토)	2024.10.22.(화) ~ 2024.10.24.(목)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1551-0555)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APT/AT00416/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당 사업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위탁자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30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거한 특약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이는 이후 「도시개발법」 제50조에 기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 말소예정입니다. (특히, 특약등기 말소는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고 특약등기 말소가 지체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특약등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며 해당 사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9.30.(월)	2024.10.02.(수)	2024.10.04.(금)	2024.10.11.(금)	2024.10.14.(월) ~ 2024.10.19.(토)	2024.10.22.(화) ~ 2024.10.24.(목)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27746호(2024.08.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 26-1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39층, 4개동 총 671세대
[특별공급 235세대(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63세대, 신혼부부 76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3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4000307	01	084.9906A	84A	84.9906	32.7277	117.7183	67.2137	184.9320	26.0458	212	21	21	38	6	19	105	107	6
		02	084.9957B	84B	84.9957	32.3217	117.3174	67.2177	184.5351	25.9571	109	10	10	19	3	9	51	58	3
		03	084.9963C	84C	84.9963	32.2029	117.1992	67.2182	184.4174	25.9310	109	10	10	19	3	9	51	58	3
		04	102.9972	102	102.9972	37.7616	140.7588	81.4539	222.2127	31.1437	144	0	14	0	4	0	18	126	4
		05	115.9907	115	115.9907	42.9645	158.9552	91.7297	250.6849	35.1697	56	0	5	0	1	0	6	50	2
		06	148.9918	148	148.9918	51.5672	200.5590	117.8283	318.3873	44.3748	35	0	3	0	1	0	4	31	1
		07	155.9570A	155A	155.9570	58.7240	214.6810	123.3366	338.0176	47.4993	2	0	0	0	0	0	0	2	0
		08	155.9511B	155B	155.9511	58.2340	214.1851	123.3319	337.5170	47.3896	2	0	0	0	0	0	0	2	0
		09	155.9511C	155C	155.9511	57.3810	213.3321	123.3319	336.6640	47.2009	2	0	0	0	0	0	0	2	0
	합계										671	41	63	76	18	37	235	436	19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084.9906A	084.9957B	084.9963C	102.9972	115.9907	148.9918	155.9570A	155.9511B	155.9511C
약식표기	84A	84B	84C	102	115	148	155A	155B	155C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세대,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해당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5.02.17	2025.07.15	2025.12.15	2026.06.15	2026.11.16	2027.04.15	
84A	101동 1, 5호 102동 1, 5호 103동 1, 5호	2층	6	269,963,780	358,736,220	0	628,700,000	10,000,000	5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188,610,000
		3층	6	275,889,500	366,610,500	0	642,500,000	10,000,000	54,250,000	64,250,000	64,250,000	64,250,000	64,250,000	64,250,000	64,250,000	192,750,000
		4~5층	12	281,815,220	374,484,780	0	656,300,000	10,000,000	5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65,630,000	196,890,000
		6~9층	24	287,740,940	382,359,060	0	670,100,000	10,000,000	57,010,000	67,010,000	67,010,000	67,010,000	67,010,000	67,010,000	67,010,000	201,030,000
		10~19층	60	290,703,800	386,296,200	0	677,000,000	10,000,000	5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20~29층	60	293,666,660	390,233,340	0	683,900,000	10,000,000	5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68,390,000	205,170,000
		30층 이상	44	296,629,520	394,170,480	0	690,800,000	10,000,000	59,080,000	69,080,000	69,080,000	69,080,000	69,080,000	69,080,000	69,080,000	207,240,000
84B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2층	3	269,019,100	357,480,900	0	626,500,000	10,000,000	52,650,000	62,650,000	62,650,000	62,650,000	62,650,000	62,650,000	62,650,000	187,950,000
		3층	3	274,944,820	365,355,180	0	640,300,000	10,000,000	5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192,090,000
		4~5층	6	280,870,540	373,229,460	0	654,100,000	10,000,000	5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65,410,000	196,230,000
		6~9층	12	286,753,320	381,046,680	0	667,800,000	10,000,000	56,780,000	66,780,000	66,780,000	66,780,000	66,780,000	66,780,000	66,780,000	200,340,000
		10~19층	30	289,716,180	384,983,820	0	674,700,000	10,000,000	57,470,000	67,470,000	67,470,000	67,470,000	67,470,000	67,470,000	67,470,000	202,410,000
		20~29층	30	292,679,040	388,920,960	0	681,600,000	10,000,000	5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68,160,000	204,480,000
		30층 이상	25	295,641,900	392,858,100	0	688,500,000	10,000,000	5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68,850,000	206,550,000
84C	101동 3호	2층	3	266,056,240	353,543,760	0	619,600,000	10,000,000	5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185,880,000

	102동 3호 103동 3호	3층	3	271,939,020	361,360,980	0	633,300,000	10,000,000	5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63,330,000	189,990,000
		4~5층	6	277,778,860	369,121,140	0	646,900,000	10,000,000	54,690,000	64,690,000	64,690,000	64,690,000	64,690,000	64,690,000	64,690,000	194,070,000
		6~9층	12	283,618,700	376,881,300	0	660,500,000	10,000,000	5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66,050,000	198,150,000
		10~19층	30	286,538,620	380,761,380	0	667,300,000	10,000,000	56,730,000	66,730,000	66,730,000	66,730,000	66,730,000	66,730,000	66,730,000	200,190,000
		20~29층	30	289,458,540	384,641,460	0	674,100,000	10,000,000	5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202,230,000
		30층 이상	25	292,378,460	388,521,540	0	680,900,000	10,000,000	5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204,270,000
102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2층	4	302,308,924	401,719,160	40,171,916	744,200,000	10,000,000	6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223,260,000
		3층	4	308,930,310	410,517,900	41,051,790	760,500,000	10,000,000	66,050,000	76,050,000	76,050,000	76,050,000	76,050,000	76,050,000	76,050,000	228,150,000
		4~5층	8	315,592,318	419,370,620	41,937,062	776,900,000	10,000,000	6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77,690,000	233,070,000
		6~9층	16	322,254,326	428,223,340	42,822,334	793,300,000	10,000,000	69,330,000	79,330,000	79,330,000	79,330,000	79,330,000	79,330,000	79,330,000	237,990,000
		10~19층	40	325,544,708	432,595,720	43,259,572	801,400,000	10,000,000	7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80,140,000	240,420,000
		20~29층	40	328,875,712	437,022,080	43,702,208	809,600,000	10,000,000	7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242,880,000
		30층 이상	32	332,206,716	441,448,440	44,144,844	817,800,000	10,000,000	71,780,000	81,780,000	81,780,000	81,780,000	81,780,000	81,780,000	81,780,000	245,340,000
115	104동 1, 4호	2층	2	344,840,158	458,236,220	45,823,622	848,900,000	10,000,000	7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84,890,000	254,670,000
		3층	2	352,395,850	468,276,500	46,827,650	867,500,000	10,000,000	7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260,250,000
		4~5층	4	359,992,164	478,370,760	47,837,076	886,200,000	10,000,000	78,620,000	88,620,000	88,620,000	88,620,000	88,620,000	88,620,000	88,620,000	265,860,000
		6~9층	8	367,547,856	488,411,040	48,841,104	904,800,000	10,000,000	8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90,480,000	271,440,000
		10~19층	20	371,366,324	493,485,160	49,348,516	914,200,000	10,000,000	81,420,000	91,420,000	91,420,000	91,420,000	91,420,000	91,420,000	91,420,000	274,260,000
		20~29층	20	375,144,170	498,505,300	49,850,530	923,500,000	10,000,000	82,350,000	92,350,000	92,350,000	92,350,000	92,350,000	92,350,000	92,350,000	277,050,000
148	104동 3호	2층	1	435,061,620	578,125,800	57,812,580	1,071,000,000	10,000,000	9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321,300,000
		3층	1	444,648,412	590,865,080	59,086,508	1,094,600,000	10,000,000	99,460,000	109,460,000	109,460,000	109,460,000	109,460,000	109,460,000	109,460,000	328,380,000
		4~5층	2	454,194,582	603,550,380	60,355,038	1,118,100,000	10,000,000	10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111,810,000	335,430,000
		6~9층	4	463,781,374	616,289,660	61,628,966	1,141,700,000	10,000,000	104,170,000	114,170,000	114,170,000	114,170,000	114,170,000	114,170,000	114,170,000	342,510,000
		10~19층	10	468,534,148	622,605,320	62,260,532	1,153,400,000	10,000,000	105,340,000	115,340,000	115,340,000	115,340,000	115,340,000	115,340,000	115,340,000	346,020,000
		20~29층	10	473,327,544	628,974,960	62,897,496	1,165,200,000	10,000,000	106,520,000	116,520,000	116,520,000	116,520,000	116,520,000	116,520,000	116,520,000	349,560,000
		30층 이상	7	478,120,940	635,344,600	63,534,460	1,177,000,000	10,000,000	10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117,700,000	353,100,000
155A	101동 2호 102동 2호	최상층	2	593,649,908	788,863,720	78,886,372	1,461,400,000	10,000,000	136,140,000	146,140,000	146,140,000	146,140,000	146,140,000	146,140,000	146,140,000	438,420,000
155B	101동 3호 102동 3호	최상층	2	592,268,760	787,028,400	78,702,840	1,458,000,000	10,000,000	13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145,800,000	437,400,000
155C	101동 1호 102동 1호	최상층	2	589,912,684	783,897,560	78,389,756	1,452,200,000	10,000,000	135,220,000	145,220,000	145,220,000	145,220,000	145,220,000	145,220,000	145,220,000	435,66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

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50%이상 달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10.21. 발표된「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표기)			84A	84B	84C	102	115	148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2	2	0	0	0	8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1	0	0	0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2	0	0	0	7
	중소기업 근로자		3	2	2	0	0	0	7
	장애인	경기도	4	1	1	0	0	0	6
		서울특별시	3	1	1	0	0	0	5
		인천광역시	1	1	1	0	0	0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1	5	5	7	3	2	3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0	5	5	7	2	1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38	19	19	0	0	0	7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3	3	4	1	1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19	9	9	0	0	0	37
합계			105	51	51	18	6	4	2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무주택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td></tr>
</table>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의정부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의정부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해당 시·도(의정부시 및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3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9.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8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 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td></tr>
<tr><td>비고</td><td>■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td></tr>
</table>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7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 (30%)</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9.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td></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43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의정부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구분	내용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Ⅳ 청약 신청 및 당첨자발표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 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취소 완료
- 청약 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 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 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11.(금) ~ 2024.10.20.(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됩니다.)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0.1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4.10.14.(월) ~ 2024.10.19.(토) (10:00 ~ 16:00)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⑥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⑫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⑭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⑩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⑪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⑥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⑨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⑪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⑫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표3> 참고)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⑬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통서류	○		①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③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⑥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⑩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⑪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⑫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배우자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⑪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

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Ⅵ 계약 체결 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10.22.(화) ~ 2024.10.24.(목) / 10:00 ~ 16:00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⑤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⑥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7-254879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미체결, 과오납 등으로 환불 신청 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써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3% 고정금리, 3% 초과분 사업주체 부담)"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타금융기관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 적용)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대출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고지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 및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33,000,000	3,300,000	29,700,000
84B	28,000,000	2,800,000	25,200,000
84C	29,000,000	2,900,000	26,100,000
102	31,000,000	3,100,000	27,900,000

115	36,000,000	3,600,000	32,400,000
148	38,000,000	3,800,000	34,200,000
155A	44,000,000	4,400,000	39,600,000
155B	47,000,000	4,700,000	42,300,000
155C	47,000,000	4,700,000	42,3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신한은행	100-037-255081	신한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일부 무상 제공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 제공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적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무상 제공 여부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일괄 적용되며 변동되지 않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

①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구분	실내기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삼성 전자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100,000	610,000	5,490,000
84B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1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4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5,500,000	550,000	4,950,000
84C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600,000	460,000	4,140,000
		전실1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4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5,700,000	570,000	5,130,000
102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7,100,000	710,000	6,39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알파룸	6,400,000	640,000	5,760,000
115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7,600,000	760,000	6,84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6,900,000	690,000	6,210,000
148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7,400,000	740,000	6,66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6,700,000	670,000	6,030,000
155A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800,000	480,000	4,320,000
		전실1	7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8,400,000	840,000	7,56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가족실	7,700,000	770,000	6,930,000
155B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600,000	460,000	4,14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7,400,000	740,000	6,660,000
		전실2('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700,000	670,000	6,030,000
155C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4,600,000	460,000	4,14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7,500,000	750,000	6,750,000
		전실2('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6,800,000	680,000	6,120,000

② 시스템 에어컨 (프리미엄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구분	실내기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삼성 전자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000,000	800,000	7,200,000
84B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1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000,000	800,000	7,20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4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7,200,000	720,000	6,480,000
84C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1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200,000	820,000	7,38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4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7,400,000	740,000	6,660,000
102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9,700,000	970,000	8,73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알파룸	8,700,000	870,000	7,830,000
115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9,700,000	970,000	8,73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8,900,000	890,000	8,010,000
148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800,000	580,000	5,22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9,700,000	970,000	8,73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8,600,000	860,000	7,740,000
155A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6,200,000	620,000	5,580,000
		전실1	7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10,800,000	1,080,000	9,720,000
		전실2('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3, 가족실	9,900,000	990,000	8,910,000
155B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9,700,000	970,000	8,730,000
		전실2('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700,000	870,000	7,830,000
155C		기본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1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9,700,000	970,000	8,730,000
		전실2('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800,000	880,000	7,92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미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 타입	빌트인 디자인 3구 인덕션(화이트 상판)	삼성전자	1,300,000	130,000	1,170,000
		LG전자	1,200,000	120,000	1,080,000
	빌트인 디자인 냉장고(4도어) + 김치냉장고(3도어) + 수납 특화장	삼성전자	5,500,000	550,000	4,950,000
		LG전자	5,700,000	570,000	5,13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삼성전자	900,000	90,000	810,000
		LG전자	1,200,000	120,000	1,080,000

• 가전기기 관련 유의사항
- 옵션 가전은 B2B 전용 모델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B2C 모델과 외형은 같을 수 있지만, 내부 스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팬트리장(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로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 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 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는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주방 상판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도어는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기본 하부 수납장이 적용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추가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구/마감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	품목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약식표기)	위치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5,900,000	590,000	5,31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200,000	320,000	2,88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2,000,000	200,000	1,80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000,000	200,000	1,80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3,600,000	360,000	3,240,000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5,200,000	520,000	4,680,000
84B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5,800,000	580,000	5,22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4,900,000	490,000	4,41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000,000	300,000	2,70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2,000,000	200,000	1,80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300,000	230,000	2,07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5,000,000	500,000	4,50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000,000	100,000	90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500,000	250,000	2,25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000,000	200,000	1,80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5,000,000	500,000	4,50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4,400,000	440,000	3,960,000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커튼박스 간접등			
84C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5,500,000	550,000	4,95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4,600,000	460,000	4,14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100,000	310,000	2,79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2,000,000	200,000	1,80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100,000	210,000	1,890,000
		주방 장식장 *주방 스타일업 옵션 적용 시 선택 가능		-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상부장 유리도어	2,000,000	200,000	1,80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형	①드레스룸	- 시스템가구+가구도어	1,200,000	120,000	1,080,000
			②대형 드레스룸+복도 장식장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장식장(유리도어+유리선반)	2,600,000	260,000	2,34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000,000	100,000	90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500,000	250,000	2,25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000,000	200,000	1,80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4,800,000	480,000	4,32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커튼박스 간접등	4,100,000	410,000	3,690,000
102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현관 대형 수납공간 선택형		- 현관 대형 수납공간+청소기장	100,000	10,000	9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알파룸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6,400,000	640,000	5,76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욕실1, 알파룸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5,500,000	550,000	4,950,000
			벽부형①-3 히든도어+디자인월 *주방 특화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5,700,000	570,000	5,130,000

			벽부형①-4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주방 특화 선택 시	- 안방, 침실1,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4,800,000	480,000	4,32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100,000	310,000	2,79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2,200,000	220,000	1,98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200,000	220,000	1,980,000
		주방 특화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 주방 특화 레이아웃+상부장 유리도어, 유리선반 - 주방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 가구) - 3구 인덕션(삼성/LG) *주방 특화 선택 시 아일랜드형 렌지후드 적용	9,500,000	950,000	8,55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5,000,000	500,000	4,50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700,000	270,000	2,43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300,000	230,000	2,07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5,600,000	560,000	5,04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알파룸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커튼박스 간접등	5,100,000	510,000	4,590,000
		조명 스타일업 ②-1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주방,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6,000,000	600,000	5,400,000
		조명 스타일업 ②-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주방특화 옵션 선택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주방,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커튼박스 간접등	5,600,000	560,000	5,040,000
115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6,900,000	690,000	6,21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3,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6,000,000	600,000	5,40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600,000	360,000	3,24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2,400,000	240,000	2,16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200,000	220,000	1,98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6,000,000	600,000	5,40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900,000	290,000	2,61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400,000	240,000	2,16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6,600,000	660,000	5,94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5,900,000	590,000	5,310,000
148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7,100,000	710,000	6,39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3, 욕실1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6,200,000	620,000	5,58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 소파 뒷 벽 픽처레일	3,600,000	360,000	3,24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3,000,000	300,000	2,70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200,000	220,000	1,98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7,400,000	740,000	6,66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300,000	130,000	1,17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2,700,000	270,000	2,430,000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3,700,000	370,000	3,33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6,400,000	640,000	5,76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6,000,000	600,000	5,400,000
155A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1,000,000	1,100,000	9,90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2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3,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0,100,000	1,010,000	9,09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5,500,000	550,000	4,95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3,500,000	350,000	3,15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1,800,000	180,000	1,62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6,900,000	690,000	6,210,000
	침실2	침실2 붙박이장		- 수납형	1,300,000	130,000	1,17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700,000	270,000	2,43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300,000	230,000	2,07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7,600,000	760,000	6,84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2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가족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7,100,000	710,000	6,390,000

155B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2,500,000	1,250,000	11,25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3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1,600,000	1,160,000	10,44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7,000,000	700,000	6,30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4,100,000	410,000	3,69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500,000	250,000	2,25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5,200,000	520,000	4,680,000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 수납형	1,400,000	140,000	1,26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700,000	270,000	2,43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300,000	230,000	2,07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7,600,000	760,000	6,84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7,100,000	710,000	6,390,000
155C	현관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①-1 히든도어+디자인월	-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2,500,000	1,250,000	11,250,000
			벽부형①-2 히든도어+디자인월 *침실3 선택형 옵션 선택 시	- 안방, 침실1, 침실2, 욕실1, 욕실2 히든도어 - 공용공간 디자인월	11,600,000	1,160,000	10,440,000
			벽부형② 아트월 세라믹 타일+시트판넬	- 아트월 대형 유럽산 세라믹 타일 - 공용공간 시트판넬 마감	7,000,000	700,000	6,300,000
			바닥형	- 공용공간 유럽산 바닥타일(600*600)	4,100,000	410,000	3,690,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미드웨이 선반	2,300,000	230,000	2,07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 슬라이딩	5,200,000	520,000	4,680,000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 수납형	1,400,000	140,000	1,260,000
	침실3	침실3 붙박이장		- 수납형	1,200,000	120,000	1,080,000
		선택형	①홈오피스	- 홈오피스(슬라이딩 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700,000	270,000	2,430,000

			②대형 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복도 대형 팬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기본제공) 미적용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유상옵션) 선택불가	2,300,000	230,000	2,070,000
	전체	조명 스타일업 ①-1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 커튼박스 간접등	7,600,000	760,000	6,840,000
		조명 스타일업 ①-2 *침실3 선택형 ②대형 드레스룸 적용 시 선택가능		-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가족실 고급 직·간접 직부등 -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주방 고급 직·간접 식탁등 / 복도, 안방 고급 매입등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커튼박스 간접등	7,100,000	710,000	6,390,000

• 가구/마감재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307023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공급)주체 및 공급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롯데건설(주))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입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 문제로 계약 체결 후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Ⅷ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유입학생 중 초등학생은 금오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의정부시 중학군 내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부 및 의정부교육지원청 등 해당관청의 학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경, 인근 지역의 타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학생배치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설계관련 주요사항
주변부지		• 당 사업지는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모형, CG, 카달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변의 테마파크1부지, 테마파크2부지, 오피스텔부지, 경관녹지부지, 주차장부지, 어린이공원부지, 도로 등에 대한 계획은 2024년 05월 03일 고시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의 시행승인(3차변경)고시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4-80호) 계획에 기준하여 표현하였음. 다만, 해당 부지들에 대한 계획은 추후 인·허가 진행 및 현장여건, 그리고,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더불어, 공동주택이 준공될 시점에 주변부지에 들어갈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은 함께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유의하길 바라며, 특히, 테마파크2부지와 오피스텔부지의 경우, 매각될 예정이나 분양시점 현재 향후 매각 여부, 시설물 및 건축물의 형태, 준공시기 등은 정해진 바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의 주차장부지, 단지 서측의 테마파크1부지, 테마파크2부지, 오피스텔부지는 단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소유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람. • 단지 서측의 테마파크1부지에는 8층 이하, 오피스텔부지에는 16층 이하, 테마파크2부지에는 15층(1층, 2층을 제외한 층고는 4.5m 이하) 이하 높이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의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테마파크1부지, 테마파크2부지, 오피스텔부지에는 집객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외부 기반시설(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테마파크1, 경관녹지,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로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동측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으로 헬기 이착륙 및 구급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의정부소방서가 위치하여 소방차, 구급차 출동으로 인한 빛공해·소음·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북측의 경관녹지와 단지 동측의 어린이 공원은 단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소유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람. • 단지 동측의 15m도로와 12m도로의 경우,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일환으로 단지진입과 접근을 위해, 단지 준공시점에 맞춰 신설될 예정임. • 단지 남측의 확폭예정도로의 폭은 20m임. 단지 서측의 도로는 오피스텔부지와 테마파크2부지의 차량접근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당 단지로의 진입은 불가함. • 단지 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 시공 시 일부 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인·허가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 현장은 2021년 12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1년 10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및 옹벽 계획, 주출입구 차단기, 주동부 롯데로고표기, 1층부 측벽 오픈구 조적으로 막음, 등은 향후 경미한 사업승인변경을 통해 현장 여건 및 경미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으로 시공 예정이며, 분양홍보물과 상이하게 현장 시공될 예정임. •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건설사업은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 및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개발이익을 목적사업인 테마파크1 및 그 인접 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우선하여 기여하기로 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휀스설치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휀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단, 입주 시 단지 서측 부지 공사 미완료에 따른 단차 발생 시 공공보행통로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음.
	구역경계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엔지니어드 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모든 타일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강마루 특성 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 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	• 모형, CG, 카달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어 있는 테마파크1부지 시설물 및 건축물은 2024년 05월 30일 건축허가 접수된 도서를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음.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은 추후 인·허가 진행 및 현장여건, 그리고,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더불어, 공동주택이 준공될 시점에 테마파크1부지에 들어갈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은 함께 완료되지 않음에도 유의하길 바라며, 특히, 분양시점 현재 향후 시설물 및 건축물의 규모, 형태, 준공시기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84A, 84C, 102 타입이 건립되었으며 마감재는 84A, 84C 타입은 BEIGE(베이지) / 102 타입은 NATURAL(내추럴)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타입을 참조하여 관람하시기 바람. • 마감재는 84A, 84B, 84C 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102, 115, 148, 155A, 155B, 155C 타입은 NATURAL(내추럴)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함.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 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 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단지 계획	공통사항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PIT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나 음용할 수 없으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고 필로티 인근에 휴게시설, 포켓정원 등 조경시설이 인접하게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포켓정원,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확장 시 거실과 안방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이중창 타입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안방창에 대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 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함.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4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필로티 하부에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현장 여건에 따라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남측 차량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어 101동, 102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측 출입구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 •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 상부 조경토심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음.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음.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1동 옥상층, 103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옥상층, 103동 옥상층, B1F 휀룸#2, B1F PIT(104동), B2F 휀룸#2, B2F 휀룸#3, B3F 휀룸#2, B3F 휀룸#3, B4F 휀룸#2, B4F 휀룸#3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Ⅶ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18(g)로 설계되어 있음. • 외부 사인물, BI는 추후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출입구	• 단지 차량출입구는 동측, 북측에 2개소가 설치되며, 동측의 차량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과 함께 이용하는 출입구로 해당 출입구를 통해 진입 시에는 지하 2층부터 공동주택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북측의 차량 출입구는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로 해당 출입구를 통해 진입 시에는 지하 1층부터 공동주택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음. 회차공간 및 이외 연계된 키

		즈스테이션은 동측 차량출입구에만 계획되어 있음.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필로티	• 당 단지는 전동 필로티 계획되어 있으며, 다만 필로티 일부공간에 각 동별 쓰레기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음. • 각 동별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 • 각동 필로티 내부에는 휴게시설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아파트 주동	• 101동 북측에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포켓정원 및 동앞정원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5호라인 하부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3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 서남측 3, 4호라인 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테라스가든 인근에 노출되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남측에는 20m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서측에는 테마파크2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추후 매각되어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4,5호라인의 일부 저층세대는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또한, 테마파크2부지와 당 사업지 근린생활시설 사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101동 남측과 서측 단차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동측 단차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 키즈스테이션, 회차공간, 차량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북동측에는 보행자전용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램프, 엘리베이터와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관경관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남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 2호라인 최상층에는 155C 타입, 2, 3, 4호라인 최상층에는 155A 타입, 4, 5호라인 최상층에는 155B 타입의 펜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그 하부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우천 시 테라스면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로 인해 소음, 조망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의 지상층에서의 출입구는 3호라인 하부에 통합형으로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2호라인 및 4호라인에 각각 계획되어 있음. • 102동 북측에 휴게시설 및 수경시설을 포함한 중앙광장,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측에 동앞정원 및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5호라인 하부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1, 2, 4호라인 하부와 102동 동측 어린이놀이터 및 커뮤니티시설 인근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2동 서측과 북서측 3, 4, 5라인 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노출되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동측에는 12m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서측에는 테마파크2부지와 오피스텔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추후 매각되어 각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3, 4, 5호라인의 일부 저층세대는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또한, 테마파크2부지 및 오피스텔부지와 당사업지 근린생활시설 사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102동 서측 단차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동측에는 지상 2개층 규모의 커뮤니티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시니어클럽)과 지하 1층 캐슬리안센터(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클럽, 탈의샤워실, 코인세탁실, 북카페, 독서실 등)와 연결되는 선큰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특히, 지상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2개층 규모로 계획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 조망 및 일조간섭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102동 남동측에는 보행자전용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램프, 엘리베이터와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관경관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1, 2호라인 최상층에는 155C 타입, 2, 3, 4호라인 최상층에는 155A 타입, 4, 5호라인 최상층에는 155B 타입의 펜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그 하부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우천 시 테라스면에서 흘러내리는 우수로 인해 소음, 조망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의 지상층에서의 출입구는 3호라인 하부에 통합형으로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2호라인 및 4호라인에 각각 계획되어 있음. • 103동 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중앙광장, 남측에 휴게시설 및 동앞정원,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측에 포켓정원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간섭,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와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5호라인 하부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2, 4호라인 하부와 103동 동측 커뮤니티시설 인근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3동 서측 3, 4 ,5라인 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노출되어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동측 커뮤니티시설 옥상층에 커뮤니티시설 용 실외기가 노출되어 배치됨에 따라 이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3동 동측에는 12m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서측에는 테마파크1부지와 오피스텔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에는 각각 추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단, 오피스텔부지는 매각예정), 이에 따라 3, 4, 5호라인의 일부 저층세대는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또한, 테마파크1부지 및 오피스텔부지와 당사업지 근린생활시설 사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특히, 테마파크1부지와는 당 사업장의 레벨계획이 유사하여, 추후 테마파크1부지와 당 사업장 사이

		에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형태나 디자인 및 구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103동 서측 단차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동측에는 지상 2개층 규모의 커뮤니티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시니어클럽)과 지하 1층 캐슬리안센터(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클럽, 탈의샤워실, 코인세탁실, 북카페, 독서실 등)와 연결되는 선큰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특히, 지상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2개층 규모로 계획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 조망 및 일조간섭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103동 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의 지상층에서의 출입구는 3호라인 하부에 통합형으로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2호라인 및 4호라인에 각각 계획되어 있음 • 104동 남측, 서측에 동앞정원 및 포켓정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4호라인 하부에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2호라인 하부와 104동 북측 차량출입램프 인근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4동 북측에는 공동주택 전용 차량 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동측에는 12m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4동 서측에는 테마파크1부지가, 북측에는 주차장부지 위치하고 있으며, 테마파크1부지에는 추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3, 4호라인의 일부 저층세대는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주차장부지 또한 주차장부지개발에 따른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3, 4호라인의 일부 저층세대는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또한, 테마파크1부지와 당사업지 사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특히, 테마파크1부지와는 당 사업장의 레벨계획이 유사하여, 추후 테마파크1부지와 당사업장 사이에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형태나 디자인 및 구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104동의 지상층에서의 출입구는 2호라인 하부에 통합형으로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2호라인 및 3호라인에 각각 계획되어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	•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최종사업승인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5세대 조합인 101동, 102동, 103동은 비상용승강기 3대, 피난용승강기 1대 계획되어 있고, 4세대 조합인 104동은 비상용승강기 2대, 피난용승강기 1대 계획되어 있음. 단, 각 동에 설치된 피난용승강기의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별도의 부속실이 설치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 101동 남동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상층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상가면 외부공간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 해당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103동 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상층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 1층 공동주택 전용주차장과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 102동과 103동 동측에 설치되는 문주에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상층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키즈스테이션이 위치한 외부공간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단, 해당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이하에 위치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는 연결되지 않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만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용 지하주차장과 연결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무인택배	• 각 동별 지하 2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
	지하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4층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 및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며, 북측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로, 근린생활시설 이용객은 출입이 불가함. • 지하 1층의 101동, 102동, 103동 하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주차공간과는 차단기를 통해 분리되어 있음. 단, 지하 1층의 104동 하부의 경우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 1층은 104동과만 연결되고, 101동, 102동, 103동과는 연결되지 않으며,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은 전동 동선연결되어 있음. • 101, 102동 하부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보관함이 위치하고 있고, 수거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주행통로 높이는 3.1m로 계획됨. 단, 지하주차장 이용 시 수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2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휀룸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1 ~ 4층에 급속 8대 / 완속 20대 / 이동형 충전기 12대 총 4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고, 총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에 맞게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동·호수별 지하층 입구와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 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보관함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하주차장 내부에 별도 구획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는 102동과 103동 사이 북동측 별동 지상 2층에 설치되며,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하층과 연결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스포츠 시설(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 및 에듀시설(북카페, 독서실)은 102동과 103동 사이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됨. 또한, 채광 확보 및 접근을 위한 선큰과 외부계단이 설치되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도 설치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1층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지하 2층 주차장과 지상 2층까지 수직 연결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102동과 103동 사이 북동측 별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하층과 연결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102동과 103동 사이 북동측 별동 지상 2층에 설치되며,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하층과 연결됨.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북카페(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남측 차량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공급시설	• 101동, 102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	• 단지 동측 차량 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동측 보행자출입구에 문주가 설치됨. 단지 북측 차량출입구에는 가벽형태의 부문주가 설치됨. • 단지 동측 차량 출입구는에는 진출입 관리가 가능한 경비실이 설치되고, 북측 차량출입구에는 별도의 경비실이 설치됨.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외부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보행자출입구에는 문주, 경비실이 설치되고, 단지 내 단차극복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획되어 있음. • 문주 계획 및 설치로 인하여 본 공사 시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문주 및 경비실의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 • 다만,「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할 예정임.
단위 세대	**공통사항**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됨.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H : 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단, 155A, 155B, 155C 타입의 경우 펜트하우스로 천장고는 H : 2,400임. • 84A 타입과 115 타입의 단위세대는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22년 8월 이후 최초사업승인 접수 사업장의 경우,「주택법」제 41조 2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대상이 되며, 당 사업장은 21년 10월 최초사업승인접수됨에 따라 이에 해

		당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람.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모든 무상 선택형 및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확장 미선택 시 기본 시공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 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확장세대의 경우 거실 및 안방은 조망형창호(유리난간일체형)으로 시공되나,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침실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철재난간으로 시공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55A, 155B, 155C 타입의 경우, 인·허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테라스공간으로 출입이 불가하도록 철재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당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주동 내 2개의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됨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 혹은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 3 ~ 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옥외발코니 공간은 이웃집 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외발코니 공간은 창호 등으로 확장할 수 없는 공간이며, 하층 세대의 지붕으로 구조물의 고정을 위하여 외벽에 구멍을 뚫을 수 없고, 출입공간에 별도의 난간이 설치됨. • 단위세대의 옥외발코니 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함. • 옥외발코니는 베란다의 빗물 배수를 위하여 발코니 난간 측면 또는 하부에 배수구가 설치됨. •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단위세대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드레스룸, 다용도실 등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의 설치 등에 따라 도면 기준과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 155B 타입 거실의 경우, 101동과 102동이 창호 사이즈가 서로 상이하며, 옥외 발코니의 경우 101동은 부분 오픈, 102동은 전면 오픈으로 되어 있어 155B 타입 선택 시 유의하기 바람.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공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가구조명,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 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 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외부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임.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안방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전기/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설비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욕실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CD관이 매립설치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져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청소솔의 위치는 대칭세대에 따라 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욕조외부 표면상 헤어라인 정도의 기스는 제품 하자가 아니며 제품 교체사항이 아님. • 옥외발코니에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 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매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발코니 우수, 배수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상옵션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한종류를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 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 •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옵션 선택 시 침실 마루와 연결부위(실별 목창호 하단)에 금속 재료분리대가 설치됨.

		•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옵션 선택 시 공용공간(거실, 복도, 주방, 팬트리)에만 적용되며 평면 레이아웃 관련('침실 선택형①, ②', '102 주방 특화', '102 현관 대형 수납공간 선택형') 옵션 선택에 따라 적용 부위가 상이함으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①, ②은 마감재 설치 범위가 중복되어 동시 선택이 불가함. •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① 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히든도어는 '침실 선택형①, ②' 옵션(84A 제외) 또는 '102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히든도어 적용 부위가 상이함으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155A, 155B, 155C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①, ② 옵션 선택 시 소파 뒷 벽 픽처레일 미적용. •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침실 선택형② 대형 드레스룸' 옵션 적용에 따라 침실 고급 매입등,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적용 부위 및 수량이 상이함으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 특화' 옵션 적용에 따라 주방 우물천장의 위치 및 사이즈가 상이함으로 계약 전 확인 바람. •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간접조명' 적용 여부는 타입별로 상이함. (옵션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 미적용) • 84C 주방 장식장 옵션은 '주방 스타일업' 옵션 적용 시 선택 가능함. • 102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씽크대 위치 하부 및 일부 하부장(확장 기본형 씽크대 위치 하부)에 세대 난방 분배기 및 연결 배관이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102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3구 인덕션 포함 항목으로 3구 가스쿡탑은 적용되지 않음. • 84B, 84C, 102, 115, 155A 침실2 선택형② 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침실1 붙박이장(기본제공)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붙박이장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침실2 선택형①, ②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 155B, 155C 침실3 선택형② 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기본제공)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붙박이장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침실3 선택형①, ② 옵션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 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시공 시 제공되지 않음.
기타	공통사항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제작물/ 인쇄물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함.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상담 관련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료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 행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주의사항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Ⅸ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 당 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본 공동주택의 사업대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지임에 따라 대지의 이전등기는 공동주택의 입주(공동주택 입주예정일 : 2027년 11월 예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도시개발사업 준공예정일 : 2028년 12월 예정)시까지 지연됩니다. 이에 따라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조경시설, 비상급수시설, 펌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멀티스포츠룸, 남·여 샤워/탈의실, 독서실, 남·여 1인 독서실, 스터디룸, 북카페, 키즈룸, 코인세탁실, L-라운지 등),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3.2M 지하2층 2.7M 지하3, 4층 2.3M	3.2M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법」제3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나리벡시티 공동주택
2. 신 청 자: 나리벡시티개발㈜
3. 대 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6-19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주택법」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나리벡시티 공동주택
건 축 주	나리벡시티개발㈜
준공(예정)일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6-19번지 일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39층 / 671세대
연 면 적	145,402.7532㎡(평가면적: 138,526.8175㎡)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0558-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4.6.19.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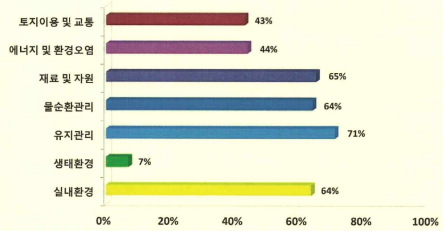

2024년 6월 19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나리벡시티 공동주택	인 증 번 호 :	24-주-에-1-0019
준공연도 :	20260801	평 가 자 :	김경태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6-19번지 일원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4층 / 지상39층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45402.7532(㎡)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 증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78.6		1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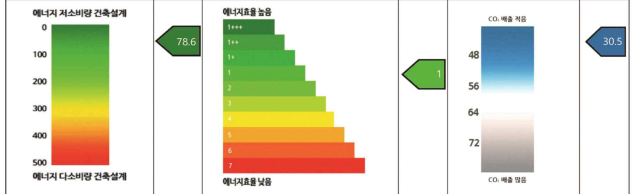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0.2	88.4	66.7	18.2
급탕	30.7	34.2	25.3	7.0
조명	7.7	7.3	20.0	3.4
환기		4.0	11.1	1.9
합계	78.6	133.9	123.1	30.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06 월 03 일

한국부동산원장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08500호	₩354,023,8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나리벡씨티개발(주)가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나리벡씨티개발(주)이고, 신한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분양대금수납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습니다.
-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롯데건설(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나리벡씨티개발(주)과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나리벡씨티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신한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신한자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나리벡씨티개발(주)에게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간의 임대확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확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나리벡씨티개발(주)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나리벡씨티개발 주식회사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신한자산신탁㈜	나리벡씨티개발㈜	롯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83, 2층(금오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280211-0168580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무소
감리금액	3,787,468,300	740,915,000	400,000,000	65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홈페이지 주소 : www.lottecastle.co.kr/APT/AT00416/main/index.do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28번지 / ☎ 1551-0555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